외국대학 파견 및 교환학생에 관한 규정

제 경: 1994.12.14

최근개정: 2012.05.02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(이하"본교"라 한다)에서 외국대학에 유학하고 자 하는 파견 및 교환학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본 규정에서 외국대학 파견 및 교환학생이라 함은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고 학생 파견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해외교류대학에 유학하는학생을 칭한다.
- 제3조(파견 및 교환목적) 해외교류대학에 파견 및 교환학생을 유학시키는 목적은 교류대학과의 학문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에게 유학 기회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.
- **제4조(관장)** ① 외국 파견 및 교환학생에 관한 일반사항은 국제협력처 국제교류과에 서 관장한다.[2009.4.22.][2010.09.14.개정]
 - ②본교에서 파견 및 교환학생의 관리를 위해 외국대학에 유학생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. 단 자격, 역할, 보수 등 유학생지도에 대한 일반사항은 따로 정한다.[2002.6.22개정]
- 제5조(응모자격) ① 자매대학에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응모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단, 본 규정 제15조에 의한 파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- 1. 본교 재학생으로 파견시점을 기준으로 **2**학기이상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이수한 자. 단, **3**학년 편입생은 예외로 한다.[2000.11.29][2004.8.25개정]
 - 2. 본교에서 이수한 평점평균이 3.00 이상인 자(3학년 편입생은 전적대학의 성적을 4.50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) [2004.8.25개정][2010.4.21]
 - 3. 해당대학의 요구에 의한 어학시험에 합격한 학생

② 삭 제

제6조(신청절차) 교류대학에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의 지도교수, 학과장, 학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협력처처 국제교류 과에 제출한다.[2009.4.22.] [2010.09.14.개정]

- 제7조(제출서류) 교류대학에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응모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파견 및 교환학생 신청서(소정양식) 1부
 - 2. 소속 학부(과)장 및 학장 추천서(소정양식) 1부.
 - 3. 영문 성적증명서 1부.
 - 4. 영문 재학증명서 1부.
 - 5. 서약서(소정양식) 1부.[2004.8.25개정]
- 제8조(선발) 파견 및 교환학생의 선발은 본교 국제협력처 국제교류과에서 주관하고,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은 총장이 한다.[2009.4.22.][2009.5.20] [2010.09.14.개정]
- 제8조의 2(선발절차 및 기준) 파견 및 교환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, 면접은 국제교류위원회에서 관장한다.[2009.5.20]
 - 해당국가 외국어 시험성적 : 100점 (회화시험 50점, 필기시험 50점) 단, 국 교환학생은 면접과 학과성적(평점평균)으로만 선발한다.[2003.5.7개정]
 - 2. 면접 50점[2006.5.23개정]
 - 3. 학교 평균평점 성적 100점(3학년 편입생은 전적대학 성적을 적용한다.)[2 004.8.25개정] 단, 다음 각 호의 선발 기준을 적용한다.
 - 가. 공신력 있는 해당국가 외국어 평가시험의 고득점자 또는 본교 국제교 육원의 해당 외국어 심화과정 **3**단계 이상 수료자에게 가산점 부여
 - 나. 해당 국가 외국학 또는 외국어전공 학생들은 전체 선발인원의 ½을 초과할 수 없다.
 - 다. 삭 제 [2003.5.7개정]
 - 라. 회화 및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성적이 50% 이하일 경우 과락으로 처리할수 있다. 단, 해당국가 외국학 또는 외국어전공 학생의 경우 과목별 과 락점수를 60%이하로 한다.[2003.5.7개정]
 - 마. 삭 제
 - 바. 삭 제 [2011.06.01.]
- 제9조(유학기간) ① 파견 및 교환학생의 유학기간은 1학기 또는 2학기로 하며,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② 삭 제

- 제10조(장학혜택) ①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본교와 해당 교류 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장학혜택이 부여된다. 단, 장기(1학기 이상)파견 및 교 환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납입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교내장학금 의 중복수혜를 불허한다.
 - ② 외국어(학)전공(영어교육과, 영어영문학과, 독일언어문화학과, 프랑스문화학과, 중국학과)로서 3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 한 학년 전체가 외국대학에 파견되는 경우 학비와 기숙사비에 한하여 등록금의 2/3범위 내에서 총장의 허락을 받은 후 파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성적 우수자에게는 본교 장학규정에 따라 별도의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[2002.5.29개정][2003.5.7개정][2009.5.20개정][2012.5.2개정]
 - ③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유학지원금을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지급할 수 있다.[2009.5.20]
- **제11조(재학기간 및 등록)** ①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유학하는 기간은 본교 재학 기간으로 본다.
 - ② 파견 및 교환학생은 교류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본교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- ③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매학기 조기 등록(7월과 12월말까지)을 필해야 한다.
- **제12조(교과과정 이수)** 파견 및 교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 - 1. 본교와 자매대학간의 협의하여 개설한 교과과정
 - 2. 소속 전공분야 혹은 유사전공분야 교과과정
- 제13조(학점인정) 파견 및 교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다음의 기준 에 따라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한다.
 - 1. 전공과목 및 전공 유사과목은 해당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장 및 교무 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.
 - 2. 어학 및 전공이외의 과목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
 - 3. 매 학기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18학점 이내로 하며 해당교류대학의 총 이수학점은 36학점 이내로 한다. 그리고 해당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성적 기준에 의해 환산하여 성적기록부에 표기한다. 단,

-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 및 본교 환산 성적은 교내 장학금 수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[2001.7.20개정][2003. 5.7개정]
- 4.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성적기록부에 "00 대학교(정확한 대학 명칭) 이수학점" 이라고 표기하고 원 과목명칭을 병기한다. 단 본교에서 취득한 과목과 유사한 과목의 경우에는 교류대학에서 동 과목을 심화학 습으로 연속 수강한 것으로 본다. [2003.5.7개정]
- 5. 한 학기 이상의 파견 및 교환학생들이 유학 기간 중 소정의 기간 동안 체류국가의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외문화탐방 2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.[2000.11.29개정][2009.5.20]
- 6. 교류대학에서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고 담임목사의 확인이 있을 경우 본 교의 채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**제14조(준수사항)**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유학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 - 1.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.
 - 2. 해외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서 신분과 목적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.
 - 3. 파견 및 교환 학생은 파견 및 교환대학에서 수업 종료와 더불어 귀국해야 한다. 단, 귀국연장 시 해당학생은 귀국연기 허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4. 해외체류기간 및 출입국상에 일어나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본인과 그 가족이 책임을 진다.
 - 5. 자매대학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강제 귀국조치를 취하고 지불한 장학금을 회수한다.
 - 6. 교환 및 파견학생은 외국대학 및 본교에서 지정하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외국어(학)전공자 파견제도 시행조건) 외국어(학) 전공자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해외 자매대학에 유학하는 기간 동안 본교의 해당학과에서는 대상학년 및 학기의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다. 단, 중국학과 이외의 외국어(학) 전 공자(과)는 9학점까지 개설 할 수 있다. 그러나 본교 수학인원이 5명 이

하인 경우 개설하지 아니한다.[2006.1.17개정]

- 2. 외국어(학)전공자 자매대학 파견제도는 해당학년 재학생의 50% 이상이 참여할 때만 허가한다. 단, 독일언어문화학과와 프랑스문화학과는 예외로 할 수 있다.[2006.1.17개정]
- 3. 학생 개인사정으로 유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동일 전공의 상급학년 전공, 자유선택, 복수전공, 부전공관련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.
- 제16조(기타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학사 내규에 따르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류위원회에서 결정한다.[2009.5.20]

부 칙

- (1) 이 규정은 1994년12월14일부터 시행한다.
 단, 1994학년도 제2학기 현재 중국 흑룡강 대학에 유학중인 학생은 본 규정에 의해 파견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(2)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10일부터 시행한다.(적용시기) 이 개정규정은 199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- (3)(시행일) 본 개정규정은 1998년 8월26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자비유학생은 대외교류과에서 따로 내규를 정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 행한다.
- (4)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1999년 9월22일부터 시행한다.
- (5)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1999년11월10일부터 시행한다.
- (6)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- (7)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0년11월29일부터 시행한다.
- (8)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21일부터 시행한다.
 - (경과조치)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학점으로 환산 표기하며, 1997 년도부터 소급 적용한다.
- (9)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1년 6월29일부터 시행한다. (경과조치) 부칙(8)는 적용하지 않는다.
- (10)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2년 5월29일부터 시행한다.
- (11)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2년 6월22일부터 시행한다.
- (12)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- (13)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4년 8월25일부터 시행한다.
- (14)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7일부터 시행한다.
- (15)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6년 5월23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개정규정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- (16)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9년 4월22일부터 시행한다.
- (17)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9년 5월20일부터 시행한다.
- (18)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0년 4월21일부터 시행한다.
- (19)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0년 9월14일부터 시행한다.
- (20)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21)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중국 교환학생 신청서

접수일자: 200 년 월 일

접수 번호

			한 글			교환대학		黑	龍江大學校		
		성 명	한 자			학 과 (복수(부) 천공학과 병기)					
			영 문			학 번					
		주민등록번호				학 년			평점 평균		
자택주소											
연락처		자택)			핸드폰)	E-mail			ı)		
병역관계		필	미필	입학년	년도				남은학기		
중국유학경험		유・무		기 간				•			
국제교육원 어학강좌 수강 여부		LEVE	LI I	ш	어학 시험	HSK			취득년도		
보 호 자	성 명			관 계		주민	등록번호				
	주 소				연락처	근무처)			핸드폰)		
	직 업			직장명					직위		

위와 같이 일본 교환학생으로 지원하며, 교환학생으로서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 키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200 년 월 일

수입증지 2000원

신 청 자 : (인)

목원대학교 총장 귀하

첨부: 영문재학증명서 1부, 영문성적증명서 1부, 추천서, 서약서, 어학시험 성적 표(해당자에 한함), 국제교육원 어학강좌 수강 증명서(Level 표기)

일본 교환학생 신청서

접수일자: 200 년 월 일

접수 번호

			한 글			교환대학	Univ		shiro Public ty of Econon	nics
		성 명	한 자			학 과 (복수(부) 천공학과 병기)				
			영 문			학 번				
			주민등록번호			학 년			평점 평균	
자택주소										
연락처		자택)			핸드폰)	E-mai			1	
병역관계		필	미필	입학	견도	남은학기			남은학기	
일본유학경험		유 •	유・무 기							
국제교육원 어학강좌 수강 여부		LEVEL I II		I III	어학 시험	JPT			취득년도	
보	성 명			관 계		주민	등록번호			
호 자	주 소				연락처	근무처)			핸드폰)	
	직 업			직장명					직위	

위와 같이 일본 교환학생으로 지원하며, 교환학생으로서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 키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200 년 월 일

수입증지 2000원

신 청 자 : (인)

목원대학교 총장 귀하

첨부: 영문재학증명서 1부, 영문성적증명서 1부, 추천서, 서약서, 어학시험 성적 표(해당자에 한함), 국제교육원 어학강좌 수강 증명서(Level 표기)

미국 파견학생 신청서

접수일자: 200 년 월 일

접수 번호

			한 글			대 학				
		성 명	한 자			학 과				
			영 문			학 번				
		주민등록번호				학 년			평점 평균	
			주 소							
병역관계		필	미필	학적 관계	신입	편입	입학 년도	입학 년도		
어학시험		TOEFL			TOEIC				두 도	
국제교육원 어학강좌 수강 여부		L	EVEL II	ш і	전화 번호		E-n	nail		
보	성 명			관 계		주민등록 번호				
호 자	주 소							전 번	화 호	
	직 업			직장명				직	위	

위와 같이 미국 파견학생(장학생)으로 지원하며, 파견학생으로서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수입증지 2000원

신 청 자 : (인)

목 원 대 학 교 총 장 귀 하

첨 부 : 영문재학증명서 1부, 영문성적증명서 1부, 추천서, 서약서, 어학시험 성적 표(해당자에 한함), 국제교육원 어학강좌 수강 증명서(Level 표기)

추 천 서

학 과 : 학 년 : 학 번 : 성 명 :

위 학생을 () 교환학생으로 추천합니다.

200 년 월 일

학 부(과) 장 : (인)

기 획 처 장 귀하

서 약 서

성 명:

소속학과: 대학 학과 학년

생년월일: 주 소:

위 본인은 목원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의 【외국대학 파견 및 교환학생에 관한 규정】에 따라 본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, 본교의 해외 교류대학 (이하 "자매대학"라 한다)에서 유학하는 기간동안 본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보호자 연서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.

- 1. 정해진 유학기간을 철저히 준수하며, 파견 유학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반드시 귀국하여 본교에 등록한다.
- 2. 본교와 해외 자매대학이 체결한 교류협정을 철저히 준수한다.
- 3. 유학기관으로 지정된 해외 자매대학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.
- 4. 유학기간 중 해외 체류국가에서 개인적인 부주의나 신상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, 경제적 문제는 파견학생인 본인과 본인의 보호자가 그 책임을 지며, 본 교에는 여하한 책임도 요구하지 않는다.
- 5. 해외에서 본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혹은 자매대학에 의해 수학능력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본교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본교의 조기 귀국 조치를 따른다.

200 년 월 일

위원인: (인)

보호자: (인)

목원대학교 총장 귀하